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와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3, 안 제67조의4, 별표 9의3 신설)

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법 제67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함
(안 제80조의2 제1항)

라.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제81조제1항 및 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
채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
하되,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마.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제81조제6항 및 제7항)

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별표9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상속인에 대한 보훈급여금등 환수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보 및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의료지원”을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4조2 전단 및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7조의3(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2. 법 제54조의4제1항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제67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54조의5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

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
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
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
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
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에 따
른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를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
용하여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 다만, 환수처분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2. 상속으로 받은 재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환수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1조제3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을 “환수하는”으로, “보훈급여금등의 반납고지서”를 “환수금 반납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납금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내지”를 “납부하지”로, “만료일”을 “만료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사람으로부터 반납금 납입”으로, “반납금 영수확인 통지서”를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후단 부분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8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 중 “법 제68조제3항”을 “법 제68조제4항”으로 한다.

제83조의2 중 “별표 9의2와”를 “별표 9의3과”으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표 9의3으로 하고,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7호(중전의 제24호) 중 “관한”을 “관한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으로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관련 자료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련 자료

2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관련 자료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조직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보훈부장관”은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일 전일까지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본다.

[별표 9의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4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장 <u>의료지원</u> <u><신 설></u>	제5장 <u>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u> <u>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u> <u>① 법 제54조2 전단 및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u> <u>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u> <u>3.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67조의3(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u> <u>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u> <u>2. 법 제54조의4제1항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u> <u>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제67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54조의5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6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u>	4. <u>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u>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 ----- ----- ----- ----- ----- -----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

현행	개정안
<u>라 한다</u>)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81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u><신 설></u>	제81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 <u>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u>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환수처분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u> 2. 상속으로 받은 재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u>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 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 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 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u> <u>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연체 금은 환수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 체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 을 초과하지 못한다.</u>
<u>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제 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 급여금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 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 은 제외한다)에게 보훈급여금등 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u>	<u>③ ----- ----- 환수하는 ----- ----- ----- ----- ----- ----- 환수금 반납 고지서----- --. 이 경우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반납금을 국가 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수</u>

현 행	개 정 안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 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 설>	<u>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u> ④ ----- 제3항----- ----- 납 <u>부하지</u> ----- ---- <u>만료일로</u>----- ----- -----. ⑤ 제3항과 제4항----- ----- <u>사람으로부터</u> <u>반납금 납입</u>----- ----- ----- <u>반납금영수</u> <u>확인통지서</u>----- -----.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1. <u>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u> 2. <u>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u> 3. <u>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u>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
<u><신 설></u>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u>별표 9의2</u>와 같다.	<u>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u> <u>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후단 부분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8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제82조(결손처분) ----- <u>법 제68조제4항</u>----- ----- -----. 제8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 ----- ----- ----- ----- <u>별표 9의3과</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보상정책과	(044) 202 - 5420
복지정책과	5611
복지운영과	5631
생활안정과	5658